

2022년도 1/4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

2022. 6.

감사위원회

특정사안감사

감 사 보 고 서

-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

2022. 3.

감 사 원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법인의 대표이거나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법인의 대표나 지분을 친인척 등에게 가공으로 이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회피하고 있다는 관련 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보조금 분야)”¹⁾ 감사를 하면서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 및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편성·집행 과정에서의 공직자와 지방의회의원 간 유착,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해 감사를 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021년도 연간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2021년 공직감찰 기본계획」에 따라 이번 감사를 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그림 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 및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고령군, 서울특별시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다.

1) 2019. 5. 8.부터 같은 해 6. 21.까지 감사를 실시

[그림 1] 감사중점

중점분야	점검사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업체와의 계약 체결 여부 · 수의계약 시 지방의회의원의 부당 행위 및 공직자의 비위 여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 여부 · 민간보조사업자와 지방의회의원 간 유착 및 점검업무 처리의 적정 여부

3. 감사실시 과정

사전에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된 지방의회의원의 재산등록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교부 및 지출 내역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언론보도와 지방의회 논의사항 등을 수집하였으며 주변인에 대한 탐문조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고령군 등 5개 기관을 선정한 후 감사 인원 5명을 투입하여 2021. 6. 21.부터 같은 해 7. 9.까지 15일간 감사를 한 데 이어 2021. 8. 23.부터 같은 해 9. 3.까지 10일간 추가로 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2022. 3. 3.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2)

1.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표 1]과 같이 지방의회의원이 법인의 대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고, 2019. 6. 2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2가 신설·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의회사무처(재산신고), 행정기관(가족관계증명서, 주주명부 등) 등에 요구할 확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내용

관련 규정		시행 일자	내용
지방계약법	제33조 (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200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위 해당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인 법인 등
	제33조의2 (자료 제출 요구 등)	2013. 8. 6. 2019. 6. 25.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함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2 (제한대상 확인 자료)	2019. 6. 25.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의 등록사항 및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2018.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 등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가능 계약부서는 의회사무처 등에 지방의회의원 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를 요구하여 제출받음(정기적/변동 시)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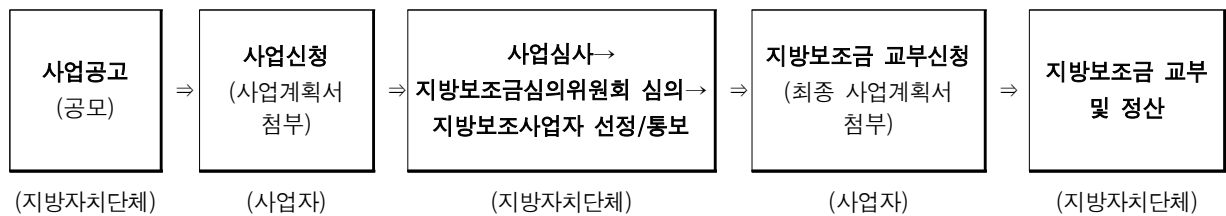
2)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법령 등을 기술함

2.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등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민간보조)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공공단체보조)하는 재정상의 원조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구 「지방재정법」³⁾(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림 2]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교부 등을 하고 있다.

[그림 2]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교부 등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위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3) 2021. 1. 12. 구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시행 2021. 7. 13.)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2]와 같이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2]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합계	징계	주의	통보(비위)	통보	고발
건수 (인원)	15 (7)	2 (3)	5	1 (1)	4	3 (3)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전 고령군의회의원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배우자와 함께 자본금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대표이사과 소유한 주식을 가공으로 이전한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계속 법인을 운영하면서 고령군을 기망하여 고령군과 수의계약(43건)을 부당하게 체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특정 단체의 청탁을 받아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안)을 발의하였으나 위 단체와 관련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업부서에 다른 지방보조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면서 특정 업체를 소개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청탁하였으며, 사업부서는 소개받은 업체와 사전에 지방보조사업의 공모기준을 협의한 후 공모를 거쳐 위 업체를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

이에 대하여 고령군수에게 군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에 대해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고령군을 기망하여 수의계약 체결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 고령군의회의원을 경찰청장에게 고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보조사업 추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경징계 이상)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관련자를 경찰청장에게 고발하는 등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고발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가. 명세: 별첨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제 목 지방의회의원이 청탁한 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지방보조사업
부당 추진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조 치 기 관 ① 서울특별시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용

1.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2017. 12. 15. 서울시의회로부터 “한강 낚시 교육 사업”¹⁾(이하 “낚시교육사업”이라 한다)으로 민간경상보조예산 2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8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받았다.

이후 사업부서인 ●본부 △부 ○과(이하 “○과”라 한다)는 낚시교육사업을 공모로 추진하였으나 적합한 지방보조사업자가 없자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²⁾(이하 “한강홍보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 추진하고 재공모³⁾를 통해 2018. 10. 12. 사단법인 ▶▶협회⁴⁾(대표자 F, 이하 “▶▶”이라 한다)를 한강홍보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1) 한강 수질, 환경, 생태보존을 고려한 서울시민 맞춤형 낚시교육 개발·운영을 주 내용으로 함

2) 한강 이용질서 확립 및 시민인식 개선·변화를 목적으로 한강공원의 쓰레기 문제와 연계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주 내용으로 함

3) ○과는 한강홍보사업 1차 공모(2018. 9. 13.~9. 28.)를 하였으나 ▶▶협회만이 공모에 참여하여 재공모(2018. 10. 2.~10. 8.)함

4) 문화재 보호 및 활용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문화재형사회적기업 25개(회원 111명)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2019. 5. 23. ▷▷연합회로 단체명을 변경함

2. 지방보조사업 변경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적격자가 없어 새로운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동일하게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검토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서울시는 2017년 12월(날짜 모름) 서울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서울시의회의원 G가 발의⁵⁾한 님시교육사업의 사업비 2억 원을 2018년도 예산 신규항목(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2017. 12. 15.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님시교육사업 예산이 편성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자 공모⁶⁾ 공고를 조건으로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로 동의⁷⁾하였고, 서울시의회는 님시교육사업이 편성된 2018회계

5) 서울시의회의원 G는 2017. 9. 10.부터 2018. 6. 30.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구에 소재한 서울시 ●●협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받아 해당 예산(안)을 2017년 12월(날짜 모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함

6) 소관부서인 ○과는 님시교육사업에 대해 “체육진흥과에서 님시교육사업을 민간보조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복 지원되지 않도록 체육진흥과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조정실 또한 “특정단체(서울시 ●●협회)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의견으로 서울시의회의 요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제시함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과는 낚시교육사업을 [표 1]과 같이 공모를 통해 추진⁸⁾하였으나 2차례 단독공모한 ◇◇교육원⁹⁾(대표자 H)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¹⁰⁾ 심의결과 적격점수(7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하는 등 적격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표 1] 낚시교육사업 추진 현황

연번	추진경과	날짜	비고
1	'낚시교육사업 추진계획' 최종 결재	2018. 3. 23.	
2	낚시교육사업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2018. 3. 28.	◇◇교육원 단독 공모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2018. 4. 23.	◇◇교육원 적격점수 70점에 미달
4	낚시교육사업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모	2018. 5. 11.	재공모 결과 ◇◇교육원 단독 공모
5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개최	2018. 6. 4.	◇◇교육원 적격점수 70점에 미달

자료: 서울시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과는 2018년 6월 중순경(날짜 모름) 낚시교육사업 예산(안)을 발의한 G 의원에게 낚시교육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으며 사업비를 불용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대면보고하였다. 이후 G 의원은 2018년 7월 중순경(날짜 모름) ㉠과에 낚시교육사업을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제의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대표이사 I와 추진할 것을 청탁¹¹⁾하였다.

- 7)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예산편성 당시에는 제127조 제3항에서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예산 증액 동의과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음
- 8) 낚시교육사업 담당자인 J(2020. 1. 31. 퇴직)는 G 의원으로부터 서울시 ㉠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고 진술함
- 9) ◇◇교육원은 2018. 3. 21. 서울시 ㉠협회 회장인 H가 강사자격증, 심판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해 서울시 ㉠협회와 동일 사업장에 별도로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서울시와 G 의원은 ◇◇교육원과 서울시 ㉠협회를 동일 단체로 봄
- 10) 외부위촉직 8명과 내부직원인 당연직 1명으로 구성됨
- 11) 2018. 7. 10., 같은 해 7. 24. 두 차례에 걸쳐 I가 G 의원의 소개로 ㉠본부 ㉠과를 방문함. 이에 대해 G 의원은 I를 2017년에 진행된 ㄴ사업 행사장에서 봤을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서울시 담당자에게 I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① 담당 공무원들은 G 의원이 한강홍보사업 추진을 제의하고 I를 소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② 2018년 7월 작성된 ㉠과 내부보고 문서에 G 의원이 I를 소개하면서 한강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의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③ [별표 1] “㉠과 담당자 및 과장 행정전화의 외부 수발신 내역(2018. 1. 1.~12. 31.)”과 같이 낚시교육사업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한강홍보사업 추진과정에서 ㉠과와 G 의원실, 지원관 K, 서울시

이에 따라 ●과는 2018년 8월 중순경(날짜 모름) [표 2]와 같이 낚시교육사업과 한강홍보사업의 목적 등이 다른데도 G 의원의 제의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별다른 절차 없이 낚시교육사업을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8. 9. 12.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본부장 결재)하였다.

[표 2] 낚시교육사업과 한강홍보사업 목적 등 비교

구분	낚시교육사업	한강홍보사업
사업목적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대상으로 친환경 낚시교육을 운영하여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여 한강 이용질서 확립
사업내용	낚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강공원의 쓰레기 문제와 연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자료: 서울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본부는 낚시교육사업과 사업목적이 다른 새로운 지방보조사업인 한강홍보사업을 지방보조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게 되었다.

3.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청탁을 공직자 등에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6조 및 제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서는

●●협회 회장 H, I가 통화한 내용이 수차례 있고, ④ 한강홍보사업 담당자 L은 G 의원실 지원관 K로부터 한강 홍보사업으로의 추진을 독려받고 I에게 잘 협조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G 의원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함

안 되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이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를 징계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¹²⁾.

따라서 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부터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특정업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대상 기준을 불공정하게 설정하여 특정업체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는 “2항 나”에서 본 바와 같이 G 의원이 한강홍보사업을 제의 하면서 ◆◆ 대표이사 I와 사업을 추진하도록 청탁하자 2018. 8. 14. ○과 사무실에서 I와 한강홍보사업 추진 관련하여 논의를 한 후 같은 해 8월 말경(날짜 모름) I로부터 I 관련 업체¹³⁾의 실적에 맞춘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미리 제출받았다.

그리고 ○과는 관련 업체가 한강홍보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12)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항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2단계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됨

13) I는 대표이사로서 있는 ◆◆이 아닌 ▶▶이 한강홍보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 사업을 접으려고 하였고, 한강홍보사업 추진을 제안받은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하기는 아까웠으며 ▶▶에 큰 실적도 필요할 것 같아 자신이 사내이사로서 있는 ▶▶이 참여할 수 있도록 ▶▶ 사무국장 M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함

이와 같이 I로부터 받은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 중 교육실적만 제외하고 그대로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장 N¹⁴⁾은 2018. 9. 12. “4항”과 같이 한강홍보사업 담당자 L이 I와 사전 협의하여 I 관련 업체의 실적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작성한 후 기안하여 ●과장 O의 중간 결재를 받은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실무진이 공모대상 기준 등을 잘 작성하였을 것으로 생각¹⁵⁾하고 일상감사 결과¹⁶⁾에 대해 묻지 않은 채 지방보조사업 변경절차 및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중간 결재¹⁷⁾하였다. 그리고 ●본부장 P가 “4항”과 같이 2018. 9. 12.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을 최종 결재함에 따라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었다.

그 결과 한강홍보사업 재공모에 신청한 2개 업체¹⁸⁾ 중 I가 사내이사¹⁹⁾로 있는 ▶▶만이 공모대상 기준을 충족하였고, ▶▶은 2018. 10. 1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총점 74.42점²⁰⁾을 득점하여 한강홍보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같은 해 10. 30. 지방보조금 2억 원을 교부²¹⁾받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14) △부장 Q가 2018. 7. 16. 전보됨에 따라 ●부장 N이 2018. 7. 23.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부장을 겸임함

15) N은 2018년 8월 중순경(날짜 모름) O로부터 “민간단체 시정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과) 문서를 보고 받아 ●과에서 G 의원이 소개한 ◆◆ 대표 I와 새로운 보조사업인 한강홍보사업을 추진하고 I와 한강홍보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16) N은 2018. 8. 30. L이 작성한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는데 결재함

17) L은 N이 결재하면서 낚시교육사업에서 한강홍보사업으로의 변경사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은 구체적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추진계획 내용에 불필요하여 삭제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함

18) 나머지 업체는 ▲▲(대표 R)로 공모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19) 2020. 12. 12. 임기만료됨

20) 정량적 평가결과 만점인 30점을 받음

21) ▶▶ 사무국장 M은 I가 한강홍보사업 총괄책임자로 참여하였고 ◆◆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정산 등 업무를 하였으며 ▶▶은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서울시 동대문구 Ω국 ♠과 L은 2018. 8. 2.부터 2019. 7. 16.까지, ♡청 파견 O는 2018. 7. 23.부터 2021. 1. 9.까지, 서울시 ♣원 P는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각각 서울시 ●본부에서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한강홍보사업 추진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 또는 총괄하였다.

가. L의 경우

L은 2018. 8. 2. ●과로 전입하면서 전임자였던 J로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낚시교육사업 공모를 2차례 진행하였으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조사업자가 적격점수 미달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G 의원이 제의한 한강홍보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같은 해 8. 14. G 의원이 소개한 ◆◆ 대표이사 I가 ●과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계받았다.

이후 L은 2018년 8월 초순경(날짜 모름) ●과장 O가 지방보조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지시하자 낚시교육사업을 사업내용이 다른 한강홍보사업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변경하고 공모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민간단체 시정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과)를 작성하여 G 의원이 소개한 ◆◆ 대표이사 I와 한강홍보사업 관련 사업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O에게 보고²²⁾하였다.

그리고 나서 L은 ◆◆ 대표이사 I와 ●과에서 회의하기로 한 날인 2018. 8. 14. 9:20경 [별표 1] “●과 담당자 및 과장 행정전화의 외부 수발신 내역(2018. 1.

22) O는 “민간단체 시정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과)를 ●부장 N, ●본부장 P에게 대면보고함

1.~12. 31.)”과 같이 G 의원실로부터 전화²³⁾를 받았고 같은 날(오전인지 오후인지 불분명) I를 ●과 사무실에서 만나 한강홍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L은 2018년 8월 말경(날짜 모름)²⁴⁾ I와 사업추진에 대해 통화하면서 I가 자신들의 실적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하자²⁵⁾ [표 3], [표 4]와 같이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자신의 업무 이메일²⁶⁾로 받았다.

[표 3] I가 제공한 한강홍보사업 공모대상 기준

공모대상 기준(전 항목 충족)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교육사업을 정산금액 기준 2천만 원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홍보사업을 정산금액 기준 2천만 원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콘텐츠기획사업을 정산금액 기준 2천만 원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사·축제사업을 정산금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자료: 서울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I가 제공한 정량적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 (30점)	인력구성	15점	① 보유인력 수행실적(13점) - 총괄책임자의 유사사업 수행실적(다른 단체에서의 수행실적 포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수행실적</td> <td>5건</td> <td>4건</td> <td>3건</td> <td>3건 미만</td> </tr> <tr> <td>배점</td> <td>13점</td> <td>8점</td> <td>3점</td> <td>0점</td> </tr> </table>	수행실적	5건	4건	3건	3건 미만	배점	13점	8점	3점	0점
	수행실적	5건	4건	3건	3건 미만								
배점	13점	8점	3점	0점									
	기관평가	15점	② 회계처리 전담인력 배치(2점) - 배치: 2점, 미배치: 0점 최근 3년간 홍보, 교육, 행사 프로그램 사업운영실적 건수(15점) - 4건 이상(15점), 3건(10점), 2건(5점), 1건 이하(0점)										

자료: 서울시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L은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면서 기존에 추진한 보조사업을

23) L은 지원관 K가 한강홍보사업으로 추진을 독려하면서 I에게 잘 협조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지원관 K는 G 의원이나 자신 중 한 명이 ●과에 전화하였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24) [별표 1] “●과 담당자 및 과장의 행정전화 외부 수신 내역(2018. 1. 1.~12. 31.)”과 같이 2018. 8. 27. 11:11경에 ♀♀ 사무국(사무국장 I)에서 L에게 전화를 걸어와 3분 9초 정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됨

25) 이 과정에서 L은 I가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였고 G 의원실 지원관 K로부터 I에게 잘 협조하라는 얘기를 들어 이러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으며 I가 보내준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에는 단체 이름이 없어 ▶▶ 실적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I는 L에게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보냈으며 L이 이를 그대로 반영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함

26) 2021. 9. 1. 디지털포넌식을 실시한 결과 L이 사용하던 PC에서 “▶▶협의회 주요실적”(최종수정일 2018. 8. 16.) 문서가 있었으나 L은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위 문서를 보고 참고한 것이 아니며 I가 이메일 본문으로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보내와 그대로 추진계획 문서를 작성하는 데 반영하였다고 진술함

위 추진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여 먼저 추진하였던 낚시교육사업의 경우 공모대상 지원자격으로 서울시 소재 낚시시민교육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하는 등 [별표 2]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공모대상 기준”과 같이 대부분의 서울시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대상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실적을 정량적 평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L은 G 의원이 소개한 I 관련 업체가 한강홍보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²⁷⁾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등을 위반하여 [표 3]과 같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일정금액 이상의 교육, 홍보, 콘텐츠기획 및 행사·축제사업 등 4가지 사업실적이 모두 있는 단체로 공모대상 기준을 제한하고, [표 4]와 같이 정량적 평가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

이후 L은 2018. 8. 30.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을 ●과장 O, ●부장 N의 결재를 거쳐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였고, 2018. 9. 3.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모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사유로 공모대상 기준을 완화하도록 의견제시를 하였다.

이에 L은 ●과장 등 상급자에게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수립하게 된 경위 및 일상감사 결과를 별도로 대면보고하지 아니한 채 공모대상 기준 중 교육사업 실적만을 제외²⁸⁾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2018. 9. 12. 새로운 보조사업인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을 기안하였으며

27) L이 한강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메모한 문서에는 “다른 단체가 선정될 가능성(환경연합 등)”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L은 예산이 불용되면 시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들을 것이라 걱정되었다고 진술함

28) L은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 최종 결재(●본부장 결재, 2018. 9. 12.)를 받은 후 2018. 9. 13. 일상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O의 결재를 받아 안전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함

●과장 O, ●부장 N, ●본부장 P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한강홍보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 결과 “2항 나” 및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 O의 경우

O는 2018년 8월 초순경(날짜 모름) L으로부터 “민간단체 시정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과)를 보고받아 G 의원이 낚시교육사업을 새로운 보조사업인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제의하면서 ◆◆ 대표이사 I와 한강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청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O는 ●과장으로서 위 보고 문서를 검토한 후 G 의원의 청탁내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고 한강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급자의 방침을 받기로 한 후 2018년 8월 중순경(날짜 모름) ●부장 N, ●본부장 P에게 대면보고하여 G 의원의 청탁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O는 2018. 8. 14. ●과에 방문한 I와 인사한 후 L에게 I와 한강홍보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²⁹⁾하도록 하였다.

또한 O는 2018. 8. 30. L이 결재 상신한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 문서가 첨부된 일상감사 의뢰서를 중간 결재하였고 같은 해 9. 3. 안전감사담당관실로부터 공모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공모대상 기준을 완화하도록 의견제시한 공문을 접수하였다.

이에 따라 O는 L이 I와 한강홍보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사전 협의한 후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였고, 일상감사결과 L이 작성한 공모대상 기준이

29) O는 L이 G 의원실에서 보조사업 때문에 소개해준 사업자라고 I를 소개하여 I의 명함을 받았으며, I와 인사한 후 실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고 L으로부터 면담내용을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함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특정업체에 맞추거나 유리한 공모대상 기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O는 L이 근무기간이 오래되어 한강홍보사업의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적정하게 작성하였을 것이라 믿고 일상감사 조치결과도 물어보지 않았으며 새로운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및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L이 기안한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을 2018. 9. 12. 그대로 중간 결재하였고 ●부장 N, ○본부장 P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사업추진을 최종 확정하였다.

그 결과 “2항 나” 및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다. P의 경우

P는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2018. 1. 1.부터 ○본부에 근무하여 낚시교육사업이 G 의원 발의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과로부터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³⁰⁾ 그리고 낚시교육사업 공모를 2차례 진행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게 되었음을 2018년 6월 초순경(날짜 모름) ○과로부터 보고받아 낚시교육사업 예산을 불용하는 것으로 ○과에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는 G 의원이 반대하여 낚시교육사업 예산을 불용할 수 없었고 P는 2018년 8월 중순경(날짜 모름) O로부터 “민간단체 시정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과)를 보고받아 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낚시교육사업을 새로운 보조사업인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G 의원이 소개한 ◆◆ 대표이사 I와 한강홍보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는 사실

30) P는 2018년 1월 초순경(날짜 모름) 업무보고 시나 업무회의 시 ○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함

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P는 G 의원의 청탁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고 O에게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정도만 물어본 후 G 의원이 원하는 사업을 하자고 O에게 지시하여 G 의원이 청탁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P는 L이 I 관련 업체의 실적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한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을 ●과장 O와 ●부장 N의 검토를 거쳐 결재 요청한 데 대해 사업기간이 짧으니 사업비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만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G 의원실에서 반대³¹⁾하자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원안 그대로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 문서를 최종 결재하였다.

그 결과 “2항 나” 및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시는 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채 지방보조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절차 위반 관련 감사결과를 인정하였다. 다만, G 의원의 한강홍보사업 추진 제의를 당시 현안이었던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으로 이해하여 받아들였고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므로 특정업체의 적격 여부를

31) O는 결재과정에서 “●본부장이 사업비를 1억 원으로 줄였으면 한다”라고 G 의원실의 지원관 K에게 유선으로 얘기하였으나 K는 “의원님께서 어렵게 마련한 돈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여 사업비를 줄일 수 없었다고 진술함

예상할 수 없어 특정업체가 공모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와 L은 G 의원이 사업에 대한 조언을 넘어 특정인을 소개하면서 한강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G 의원실의 지원관 K가 ○과에 전화하여 특정인에게 잘 협조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특정업체가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개입하는 행위로서 담당 공무원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대상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정량적 평가기준을 특정업체 실적에 맞춰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공모를 통해 여러 업체를 모집하여 더 적극적인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공모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I가 사내이사로 있는 ▶▶만이 공모대상 기준을 만족하고 정량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영향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 L의 경우

L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법규나 규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시의원이 추천하는 업체와 시의원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본부 기획예산과 등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방보조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낚시교육사업을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한 후 시의원이 소개한 ◆◆

대표이사 I와 협의하여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특정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L은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업체에 맞춘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미리 받아 한강홍보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였고, 지방보조사업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한 것은 구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당시 서울시 예산담당관, ㉠본부 기획예산과 담당자는 지방보조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O의 경우

O는 L이 지방보조사업을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여 이를 추진하였으며 L이 근무경력도 오래되어 한강홍보사업의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적절하게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추진계획을 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는 시의원이 한강홍보사업을 제의하면서 특정인을 소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않았고, 일상감사 결과 L이 작성한 공모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L에게 물어보는 등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P의 경우

P는 ○과에서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시의원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에서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규정에 맞게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진계획을 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P는 ○본부의 최고책임자인 ○본부장으로서 ○과에서 시의원이 특정인을 소개하면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청탁한 사실을 보고하였는데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시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 ○과가 특정업체와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모대상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물어보지 않은 채 이에 대해 결재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지방의회의원의 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지방보조사업 변경 및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L, O, P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청탁금지법 제6조에 위배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및 청탁금지법 제2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 ①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추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O, P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 ②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추진하거나 특정업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관련자(N)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추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L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별표 1]

●과 담당자 및 과장 행정전화의 외부 수발신 내역(2018. 1. 1.~12. 31.)

연번	행정전화번호	날짜	통화시작 시간	통화 상대방	비고	
1	담당자	J	2018. 1. 10.	15:17(2분 29초)	-(♥♥위원실) ¹⁾	수신
2			2018. 1. 15.	10:59(24초)	-(♥♥위원실)	발신
3			2018. 1. 15.	16:10(14초)	-(♥♥위원실)	발신
4			2018. 1. 16.	14:24(3분 44초)	-(♥♥위원실)	수신
5			2018. 1. 16.	14:41(1분 48초)	-(♥♥위원실)	발신
6			2018. 3. 19.	17:23(1분 53초)	-(H)	발신
7			2018. 3. 20.	10:19(5분 20초)	-(H)	발신
8			2018. 3. 26.	11:07(42초)	-(H)	발신
9			2018. 4. 9.	09:50(15초)	-(H)	발신
10			2018. 4. 18.	14:55(1분 1초)	-(◇◇교육원)	발신
11			2018. 4. 20.	14:35(6분 21초)	-(G 의원실)	수신
12			2018. 4. 23.	16:38(45초)	-(♥♥위원실)	발신
13			2018. 4. 23.	16:40(7분 15초)	-(G 의원실)	수신
14			2018. 4. 30.	16:05(6분 37초)	-(H)	발신
15			2018. 5. 9.	10:19(1분 22초)	-(♥♥위원실)	발신
16			2018. 5. 9.	10:38(1분 1초)	-(♥♥위원실)	수신
17			2018. 6. 4.	18:26(8분 37초)	-(K)	수신
18			2018. 6. 29.	10:53(16초)	-(♥♥위원실)	발신
19			2018. 6. 29.	14:03(19초)	-(♥♥위원실)	발신
20			2018. 7. 17.	09:22(7분 38초)	-(K)	발신
21			2018. 7. 17.	15:35(1분 42초)	-(K)	발신
22			2018. 7. 17.	15:43(24초)	-(K)	수신
23			2018. 7. 23.	11:11(3분 48초)	-(G 의원실) ²⁾	수신
24			2018. 7. 24.	14:16(2분 28초)	-(K)	발신
25			2018. 7. 25.	09:38(3분 4초)	-(K)	수신
26	L	2018. 8. 14.	09:20(8분 15초)	-(G 의원실)	수신	
27		2018. 8. 27.	11:11(3분 9초)	-(사무국) ³⁾	수신	
28		2018. 9. 4.	16:54(2분 40초)	-(사무국)	수신	
29		2018. 9. 5.	09:43(8분 56초)	-(K)	발신	
30		2018. 9. 10.	09:32(2분 54초)	-(K)	수신	
31		2018. 9. 10.	10:29(1분 50초)	-(사무국)	수신	
32		2018. 9. 17.	16:16(3분 26초)	-(◆◆)	수신	
33		2018. 9. 17.	16:29(10분 1초)	-(◆◆)	수신	
34		2018. 9. 20.	13:56(9분 33초)	-(◆◆)	수신	
35		2018. 10. 24.	15:23(8분 48초)	-(◆◆)	수신	
36		2018. 10. 24.	15:45(2분 19초)	-(◆◆)	수신	
37		2018. 12. 13.	13:52(21초)	-(G 의원실)	수신	
38	과장	S	2018. 4. 13.	16:02(1분 29초)	-(G 의원실)	수신
39			2018. 4. 13.	16:07(1분 41초)	-(G 의원실)	수신
40		O	2018. 8. 14.	09:30(2분 45초)	-(K)	발신
41			2018. 10. 15.	11:00(2분 12초)	-(G 의원실)	수신

주: 1. G 의원은 2016. 7. 17.부터 2018. 3. 21.까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3. 2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으로 근무함

2. 서울시의회 행정전화번호가 2018. 7. 1.부터 변경됨

3. ◆◆ 대표이사 I는 2012년 7월부터 ♡♡ 사무국장으로 근무함

자료: 서울시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공모대상 기준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공고기간	공모대상 기준
1	마음톡톡 예술톡톡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17. 2. 9.~2. 23.	최근 5년간 공모내용과 관련된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사회적경제 국제청년 창업프로그램 운영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7. 8. 10.~8. 25.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사회적경제 국제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3	뉴시교육사업	●본부 △부 ●과	2018. 3. 28.~4. 11.	서울시 소재 뉴시시민교육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4	한시대중화 지원사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9. 2. 1.~2. 15.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한시 관련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5	한-노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9. 7. 15.~8. 5.	한국, 노르웨이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사업이 가능한 서울시 소재 음악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등
6	민간국제문화교류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9. 8. 19.~9. 6.	지역자원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민간단체(법인)로서 민간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자료: 서울시 제출자료 재구성